

# 방송국 운영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 방송국 운영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부속 방송국(이하 '방송국'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설치장소) 본 방송국은 한국항공대학교 내에 설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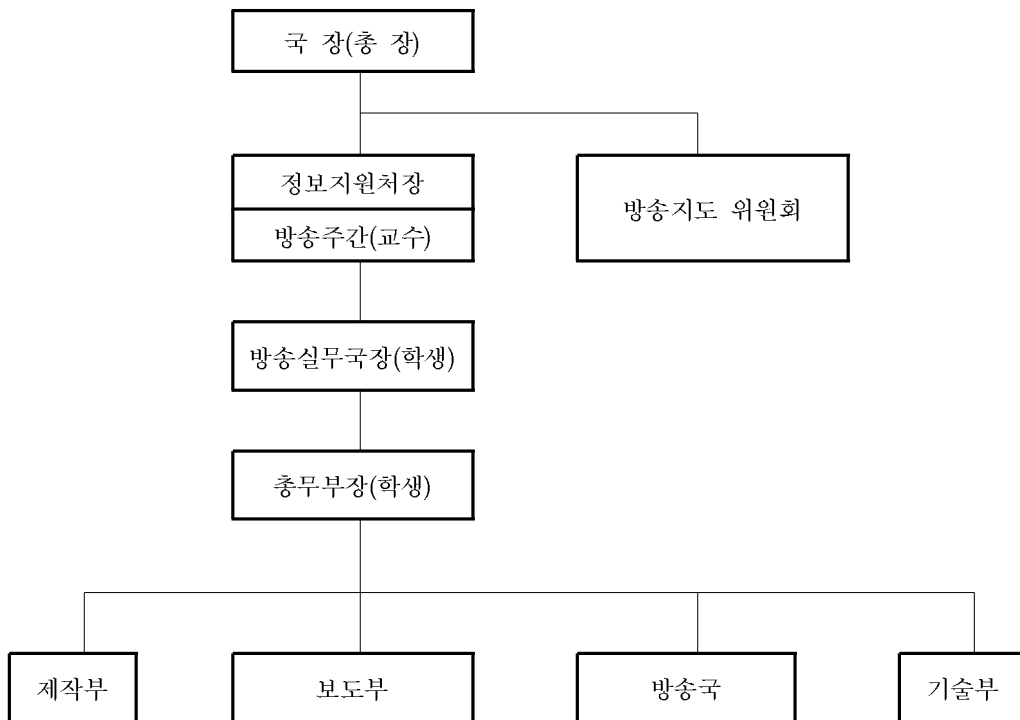
제3조 (호출부호) 본 방송국의 호출부호는 A.B.S(AEROSPACE BROADCASTING STATION)로 표기한다.<개정 2007.5.1>

제4조 (방송) 본 방송국은 학칙과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방송을 통하여 건전한 학풍조성과 정서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 구현에 이바지함으로써 대학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방송
2.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송
3. 학내·외에 기사보도 및 공지사항 방송
4. 학회, 씨클의 활동을 위한 봉사 방송

## 제 2 장 조 직

제5조 (구성) 본 방송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<개정 2007.5.1>



**제6조 (국장)** 방송국장은 총장이 되며 방송국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괄 감독한다.

**제7조 (방송주간)** 방송주간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방송국장이 임명하며 본 방송국 업무를 총괄하고 국원을 지도 감독한다.

**제8조 (방송지도 위원회)** ① 방송지도 위원회는 방송주간 및 행정처장과 본 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교수로 구성한다.

② 방송지도 위원회는 본 방송국의 기본운영 방침과 예산 결산의 심의, 기타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.

**제9조 (학생 방송국원)** ① 학생 방송국원은 실무국장, 총무부장, 각 부장, 국원으로 구성하며 실무국장은 정기총회에서 국원 비밀투표로 하되 재적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방송국장의 승인을 얻는다.

② 실무국장 및 부장의 임기는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1년으로 한다.

③ 방송국원은 별도의 전형을 거쳐 방송주간이 임명한다.

④ 각 부장은 실무국장이 임명한다.

**제10조 (실무국장)** 방송실무국장은 방송국의 인원, 제작, 편성 등 제반실무를 담당한다.

**제11조 (부장)** ① 총무부장은 기획 및 예산을 담당한다.

② 제작부장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작을 담당한다.

③ 보도부장은 방송기사의 취재를 담당한다.

④ 아나운서 부장은 방송진행을 담당한다.

⑤ 기술부장은 방송기재의 설치, 운영, 수리, 관리 등을 담당한다.

### 제 3 장 국원 및 회의

**제12조 (국원)** 본 방송국의 국원은 정국원과 수습국원으로 구분한다.

1. 정국원은 6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방송실무국장의 발령을 받은 국원을 말하며 본 방송국의 업무에 적극 참여한다.

2. 수습국원은 본 방송국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규 임명한 국원을 말하며 방송국 업무에 정국원을 보조한다.

3. 수습국원은 본 대학교 1학년 재학생 중에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발한다.

**제13조 (국원의 권리 의무)** 국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국원은 본 방송국 업무에 적극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2. 국원은 학칙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본 방송국의 제반 지시사항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명예를 지킬 의무를 갖는다.

**제14조 (국원의 대외활동)** 국원이 본 방송국 업무와 관련되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방송주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5조 (자격상실 등)** ① 국원이 휴학할 경우에는 휴학일로부터 국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② 국원은 본 대학교 및 방송국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국원의 자격을 상실

한다.

**제16조 (총회)** ① 정기총회는 매학기말 방송실무국장이 소집하고 임원선출, 연간 사업계획작성 등 방송국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.

② 임시총회는 국원 1/3 이상의 요청에 의해 방송실무국장이 소집하며 그 기능은 정기총회에 준한다.

**제17조 (국원회의)** 국원회의는 매주 개최하며 방송업무에 대한 보고와 지시, 토의, 건의 사항 등과 월간 방송진행 사항을 평가 분석한다.

## 제 4 장 재 정

**제18조 (재원)** ① 본 방송국의 재정은 언론방송비와 교비지원금 기타 보조금으로 운영한다.

② 방송실무국장은 매학년초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결산을 방송주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9조 (집행)** 본 방송국의 재정 집행은 본 대학교 회계관계 규정에 준용한다.

**제20조 (기재관리)** ① 방송국의 모든 시설 및 기재를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주간의 결재를 득한 후 대학교 물품관리 규정에 준용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07년 3월 12일부터 적용한다.